

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이상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27.

발의자 : 이상민 · 소병훈 · 유승희

이종걸 · 장병완 · 김종민

박명재 · 임재훈 · 채이배

김중로 · 김삼화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농산업은 생명공학, 스마트농업, 농식품자원정보, 농업기상 및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활용 등 실시간으로 대용량 빅데이터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. 농생명자원의 거대유전체 분석, 실시간 병충해 관리 및 예방시스템 등 실시간 대용량 빅데이터 분석과 농산업적 활용을 혁신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팅자원의 파워가 절실하게 필요함.

이와 같이 농산업의 빅데이터의 통합적인 수집, 분석 및 활용과 이를 뒷받침할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수단이 미흡함.

이에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농산업 빅데이터의 국가적 생산, 관리

및 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).

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농촌진흥청장 :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시책 강구)</p> <p>① (생 략) 1. ~ 10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8조(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시책 강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농촌진흥청장 :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</u></p>